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 3분)

○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정태현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안이유

○ 보건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관련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대체 제정되었고 의료기사법중 안경업소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였던 위임 조례의 항목을 삭제하고

- 안마사 자격인정과 자격증교부 권한의 이원화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 되어 위임조례를 삭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 조치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관련

- 공장등록과 공장정비 명령, 기준초과용지 매각, 공장이전 명령의 위반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개별법상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개정되거나 상공부장관에게 환원되고 일부 법령은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였던 위임 조례의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보건과 위임 16건 삭제
- 공업과 위임 5건 삭제

※ 개정후 현황

- 총 위임 건 수 : 593건 → 572건
- 보건과 위임건수 : 86건 → 70건
- 공업과 위임건수 : 21건 → 16건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의약품사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예산현황 : 해당없음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권한의 위임사항) 별표중 “보건과 소관 제32호 내지 제40호와 제68호 내지 제69호 및 공업과 소관 제10호, 제15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권한의 위임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과	1~3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2	(삭 제)	
	33	(삭 제)	
	34	(삭 제)	
	35	(삭 제)	
	36	(삭 제)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삭 제)	
공업과	41~6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8	(삭 제)	
	69	(삭 제)	
공업과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과	1-31	(생 약)	(생 약)	보건과	1-3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2	○ 독극물관대업 등록 및 허가	독물및극 물에 관한 법률제 12 조 제13조		32	(삭 제)	
	33	○ 동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동법 제26 조		33	(삭 제)	
	34	○ 독극물관대업의 폐업, 휴업, 재 개업 신고수리	동법시행 규칙 제20 조		34	(삭 제)	
	35	○ 동시설의 개수, 사용금지 용기 나 포장의 교체 명령	동법 제 25 조		35	(삭 제)	
	36	○ 동 등록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동법 제24 조		36	(삭 제)	
	37	○ 시험상 필요한 독극물의 수거	상 동		37	(삭 제)	
	38	○ 독극물의 판매 업등록대상비치 및 등록증 교부	동법시행 규칙 제7 조		38	(삭 제)	
	39	○ 독극물 판매업 자의 독극물 판 리자 변경신고	동규칙 제 18조		39	(삭 제)	

현		령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40	○ 독극물 판매업 자 등록사항 변경	동규칙 제 19조		40	(삭 제)	
	41-67	(생 락)	(생 락)		41-6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8	○ 안마사 자격증 교부	안 마 사 예 관한 규칙 제3조		68	(삭 제)	
	69	○ 안경업소에 관 한 다음의 권한			69	(삭 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의료기사법 제13 조 의 4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			(삭 제)	
		나.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교부	동법시행규 칙 제16조			(삭 제)	
		다. 안경업소 등록 사항 변경 및 휴·폐업신고 신고수리	동 법 제 13 조의 5			(삭 제)	
		라.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동법 제13 조의 6			(삭 제)	
		마.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동법 제13 조의 7 및 제13조의 8			(삭 제)	
		바.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동 법 제 17 조의 3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공업과	1-9	(생 락)	(생 락)	공업과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 공장등록 증명	공업태치 법 제14조		10	(삭 제)	
	11-14	(생 락)	(생 락)		11-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 이권축진지역및 제한정비지역안 의 기존공장의 등 록및 변경등록	동법 제 14 조		15	(삭 제)	
	16	○ 기준초과 용지 의 매각	동법 제12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 조 내 지 제17조		16	(삭 제)	
	17	○ 공장정비 명령 등	동법 제24 조		17	(삭 제)	
	18	○ 공장이전 명령 의 위반에 대한 조치	동법 제 29 조		18	(삭 제)	

參考資料 1

## 忠清北道事務의 委任條例改正關聯資料

〈保 健 分 野〉

- 改正對象事務 關聯 根據
- 關 聯 法 規 拔 萃



## 改正對象事務關聯 根據

개 정 대 상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일련번호	사 무 명	현 행	개 정
32	독극물 판매업 등록 및 허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승인('91. 5. 16)
33	동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동법 제26조	동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34	독극물 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수리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동법시행규칙 1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35	동시설의 개수사용금지 용기나 포장의 교체명령	동법 제25조	동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 ('91. 5. 16)
36	동 등록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동법 제24조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37	시험상 필요한 독극물의 수거	동법 제24조	동법제2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38	독극물의 판매업 등록대상 비치 및 등록증교부	동법시행규칙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개정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일련번호	사무명	원행	개정
39	독극물 판매업자의 독극물관리자 변경신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40	독극물 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환경처행정 01215~7461호 승인('91. 5. 16)
68	안마사 자격증 교부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	과 동
69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과 동
	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과 동
	다.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신고 수리	동법 제13조의 5	과 동
	라.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동법 제13조의 6	과 동
	마.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동법 제13조의 7 동법 제13조의 8	과 동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17조의 3	과 동

## 關聯法規拔萃

현행	개정
<p>독물및 극물에 관한법을 제12조(판매업의 등록) ① 독극물은 독극물의 판매업의 등록을 한자가 아니면 이를 판매할수 없다. ...</p> <p>② (생략)</p> <p>③ 독극물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처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유독물영업자의 등록)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1. (생략)</p> <p>2. 유독물을 판매하는 유독물관매업</p> <p>3. (생략)</p> <p>등법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유독물관매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p> <p>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수리</p> <p>3. 법 제15조의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4. 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p> <p>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의 이전의 명령</p> <p>6. 법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관리자의 임명 및 개임 신고수리</p> <p>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p> <p>8. 법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p> <p>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p> <p>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파대표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권한</p>

현행	개정
<p>동법 제26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유독물영업자 및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독극물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에 있어서는 환경청장, 독극물관리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동법 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 환경청장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동법시행규칙 제20조(폐업등의 신고)</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독·극물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독극물 제조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환경청장에게, 독·극물의 수출입업자에 있어서는 환경청장에게 직접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동법시행규칙 제17조(폐업등의 신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동법 제25조(개수명령등) 환경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도지사는 독극물영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4항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되어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가 야기될</p>	<p>동법 제16조(개선명령등) ① 환경청장은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등이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현	행	정
<p>엄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때까지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그 용기나 포장의 교체를 명할수 있다.</p>		
<p><b>제24조(보고와 검사)</b> ① 환경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지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독물영업자 및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소, 영업소, 점포와 업무상독극물 또는 특정독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 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하거나 이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독극물 또는 특정독물에 대하여 시험상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b>동법 제28조(보고 및 검사)</b> ①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특정유독물 사용허가를 받은자 및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수있다. 이경우 시험상 필요한 최소분량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생략)</p>		
<p><b>동법시행규칙 제7조(독극물 판매업의 등록대상과 등록증)</b>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할 때에는 독극물 판매 판매업 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1에 의한 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b>동법시행규칙 제9조(등록증의 교부및 재교부)</b> 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유독물영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p>		

현	정
<p><b>동법시행규칙 제18조(독극물관리자의변경신고)</b></p> <p>① 독극물의 제조업자나 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가 독극물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그 등록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독극물 관리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독극물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독극물의 제조업자나 수출입업자는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b>동법시행규칙 제23조(유독물관리자의 신고서등)</b></p> <p>① 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영업자 또는 유독물수입자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 또는 개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b>동법시행규칙 제19조(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b> ① 독극물의 제조업자 그 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나 특정 독극물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1내지 3에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와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독극물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독극물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나 특정독극물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에 있어서는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 또는 도지사가 등록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 등록대상 또는 허가대상과 등록증 또는 허가증에 각각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등록증 또는 허가증은 그 신청인에게 환부한다.</p>	<p><b>동법시행규칙 제8조(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등)</b></p> <p>① (생략)</p> <p>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독물 영업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현행	개정
<p>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p> <p>① (생략)</p> <p>②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수 있다)</li> <li>사진3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달모정면 상반신 명함판)</li> </ol>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p> <p>과 동</p>
<p>의료기사법 제13조의 4(안경업소의 개설등록)</p> <p>① (생략)</p> <p>②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의료기사법 제13조의 4(안경업소의 개설등록)</p> <p>① (생략)</p> <p>②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14)</p> <p>③ (생략)</p>

현행	개정
<p>동법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 법 제13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동법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과 등</p>
<p>동법시행규칙 제16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동법시행규칙 제16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과 등</p>
<p>동법제13조의 5(휴업·폐업등의 신고)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휴업·폐업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동법 제13조의 5(휴업·폐업등의 신고)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휴업·폐업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동법 제13조의 6(보고와 검사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경사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② (생략)</p>	<p>동법 제13조의6(보고와 검사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경사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 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② (생략)</p>



현행	개정
<p>동법 제13조의7(개설등록의 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수 있다.</p> <p>1. (생략) 2. (생략)</p>	<p>동법 제13조의7(개설등록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수 있다.</p> <p>1. (생략) 2. (생략)</p>
<p>동법제13조의8(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3조의2 제2항 또는 제13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3조의2 제2항 또는 제13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동법제13조의8(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3조의2 제2항 또는 제13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3조의2 제2항 또는 제13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동법제17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등)</p> <p>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동법제17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등)</p> <p>①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參考資料 2

## 忠清北道事務의 委任條例改正關聯資料

### 〈工業分野〉

- 改正對象事務 關聯 根據
- 關 聯 法 規 拔 萃

## 改正對象事務關聯根據

개정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일련번호	사무명	현행	개정
10	○ 공장등록 증명	• 공업배치법 제14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15	○ 이전축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안의 기존공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 동법 제14조	• 동법 제16조 제1항
16	○ 기존초과용지의 대각	•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 동법 제12조에 의거 규칙 제491임 ※ 상공부 배치 28012-3170(91.12.28)호로 승인
17	○ 공장장비 명령등	• 동법 제24조	• (폐지)
18	○ 공장이전 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동법 제29조	• 동법 제27조 ※ 상공부장관 권한 환원

## 關聯法規拔萃

현행 (공업배치법)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p>제14조(기존공장의 등록) ① 이전축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그 지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상공부장관은 공업배치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축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관한 도지사에게 공장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장설립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p> <p>※ 공장등록 관련업무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p> <p>※ 이전 축진지역 및 제한 정비지역은 중복 해당없음</p>

현행 (공업배치법)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p>제12조(기준초과용지의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의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될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를 공사용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기준초과용지에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할 수 있다.</p> <p>※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사무의 위임규칙 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92. 2. 21)</p>
<p>제24조(정비명령등) 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정비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비대상 공장을 지정하여 시설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전을 명할 수 있다.</p>	<p>(세 지)</p>
<p>제29조(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상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15조 4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공장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의 설치나 그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7조(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상공부장관은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22조 4항의 규정에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공공사업 지원중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p>※ 수도권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의 공장에만 해당되므로 삭제</p>